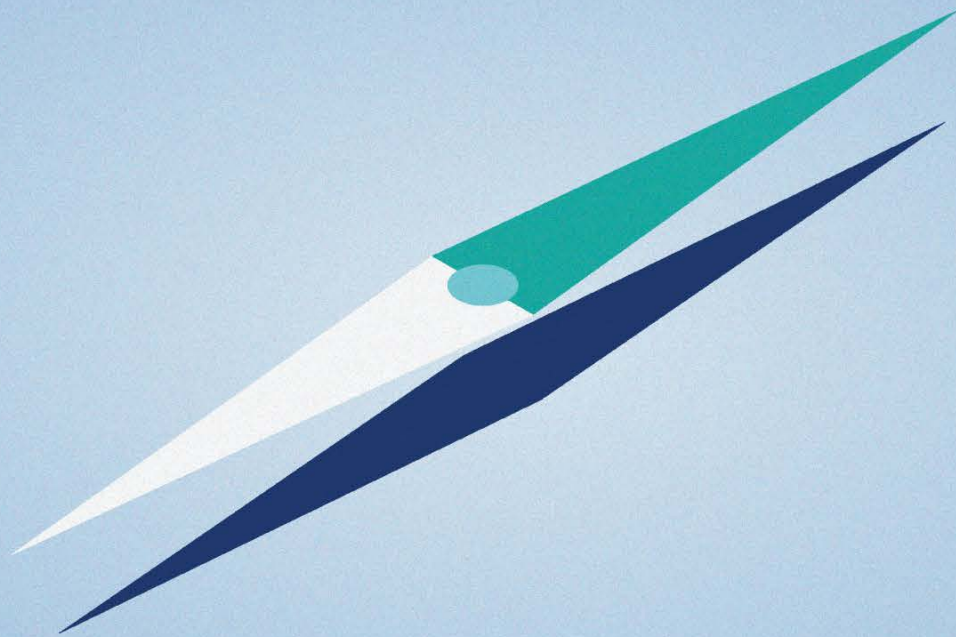


2024 ISSUES & TRENDS

BKL 2024 전망 보고서

February 19, 2024

- M&A 동향 및 추세
- 건설부동산
- 금융소송
- 인사노무
- 온라인플랫폼 및 AI 규제 동향
- 제약바이오
- 선거와 경제



bkl

Executive Summary

M&A 동향 및 추세

- 2024년에는 대기업, 대형 PE가 주도하는 M&A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건설업, 2차전자·반도체, 플랫폼 기업 분야에서 M&A가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가상자산·디지털데이터 등과 보험업 관련 M&A도 꾸준히 이어질 전망입니다. 또한 카브아웃 딜, 구조조정 딜, 아웃바운드 투자 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M&A 규제 관점에서는 최근 금융당국의 “주주가치 제고” 추세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관련 제도 변화와 그에 따른 시장의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상장회사 소수주주 권리 보호가 강화되고 있고 크로스보더 딜 관련 국내외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점도 주목됩니다.

건설부동산

- 부동산 경기의 호황으로 인하여 PF 대출이 확대되었다가 2023년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한 금융비용 상승과 부동산 가격의 하락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 PF의 부실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착공 이전의 브릿지론의 부실화가 더욱 문제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일부 건설사에 대한 워크아웃절차가 개시될 수 있으며,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용을 공여한 시공사의 대위변제와 그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2024. 4. 27. 시행예정입니다.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m² 이상의 택지에 대한 재건축 등이 촉진될 예정이며, 정부 발표에 따르면 선도지구는 2024년에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소송

- 2019년 다수의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이후 소멸시효의 문제로 올해도 계속하여 사모펀드 투자자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자본시장법하에서 펀드 관련(특히 부당이득반환의무 관련) 법률 쟁점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잇달리면서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총선 이후에도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의 경제적 불황 요인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부동산개발 신탁사업장별로 정리 수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탁사 책임준공의무 불이행 관련 명시적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20년 이후 자본시장에 급격한 변동이 있었고 2024년에도 그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그 여파로 M&A, 투자 부분의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수인 거래 종결 의무에 관한 쟁점, 주주평등원칙에 관한 쟁점 등은 앞으로 주요하게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노무

- 정부는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산업현장의 법치 확립을 위하여 임금체불, 중대재해 등을 엄단하고, 최근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채용비리에 대하여 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3대 사건(통상임금 재직자 요건, 사기업의 성과급 사건, 원청의 사용자성 사건) 중 1건 이상의 사건의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그 결론에 따라 기업들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미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간 차별 이슈에 대하여 법원이 유연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차별 관련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온라인플랫폼 및 AI규제동향

- 정부 기조가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에서 입법을 통한 사전규제로 옮겨가는 움직임이 있으나,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상당하여 향후 규제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현행 법률에 근거한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사후 규제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AI 시대에 발맞추어 정부의 다양한 AI 관련 정책방향과 제도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가 도입되어 3. 15. 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그 이외에 현재 논의되고 있는 AI 관련 제도의 경우 구체적인 입법으로 이어져 실제로 적용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약바이오

- 제약바이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을 위해 다양한 규제 및 지원 정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특히, AI, 디지털화의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관련 법률이 제정된 만큼 정책이 더욱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 규제 정책은 ▲경제적 이익제공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 시행 및 ▲의약품 GMP 단속 강화되며, 제약회사 등은 지출보고서의 작성 및 증빙자료 관리 현황, 내부 지출보고서 관리 체계의 정합성 점검 및 GMP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 디지털화 정책은 ▲디지털 의료제품법 제정 ▲첨단·분산형 임상시험 체계구축 및 임상데이터 (RWD) 표준화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약개발이 추진되며, 지원 정책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 및 제도화 추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의약품 수출전략 로드맵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이 추진됩니다. 정부의 디지털화 육성 정책과 의약품 수출을 장려하는 정책에 기반하여 사업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거와 경제

- 2024년도 세계경제 성장세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하방 리스크 역시 상존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경제 역시 수출 중심으로 전년 대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부동산 PF, 가계부채 등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있고 글로벌 정세에 따라 수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신속하고도 충분한 대응 여부에 따라 금년 경제의 실질적 성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이와 더불어 올해 4.10.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총선) 결과에 따라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방향, 정책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됩니다. 아직 총선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지만 크게 4가지 시나리오를 예측해 볼 수 있고 각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한편, 올해 11. 5. 있을 미국 대선에서는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맞대결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고수하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칠 수 있어 우리나라의 경제통상, 에너지안보, 기후 및 환경 문제와 같은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따른 대비가 요구됩니다.

Contents

Part 1 | M&A 동향 및 추세

I. 2024년 M&A 전망	7
1. Player 별 동향	7
2. 산업별 동향	7
3. M&A 유형별 동향	8
4. 기타 - 아웃바운드 투자 확대 및 주주가치 제고 동향	8
II. M&A 규제 동향	9
1. 기업결합 관련 규제 변화	9
2. 상장회사의 소수주주 권리 보호·강화	9
3. 합병가액 산정 방식 변경(예정)	11
4. Cross-border 딜 관련 국내외 규제 주목	11

Part 2 | 건설부동산

I. PF 대출 부실로 인한 분쟁 증가	13
1. PF(Project Financing) 대출의 구조	13
2. PF(Project Financing) 대출의 현황	13
3. PF(Project Financing) 대출 부실화로 인하여 예상되는 법률상 분쟁	14
II.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	15

Part 3 | 금융소송

I. 사모펀드 사태 이후 최근 판례 추세 및 2024년 전망	16
1.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및 투자자 소송	16
2. 쟁점 및 하급심 판결 동향	16
3. 2024년 전망	17
II. 책임준공이행확약 관련 잠재적 위험	18
1. 부동산신탁회사의 책임준공확약의 일반적인 현황	18
2. 2024년 전망	18
3. 주된 법적 분쟁 및 대책	18
III. M&A, 투자 분쟁 판례 및 앞으로의 전망	19
1. 최근 M&A 분쟁 판례 및 시사점	19
2. 최근 투자 분쟁 판례 및 시사점	20
3. 앞으로의 전망	21

Part 4 | 인사노무

I. 정부: 근로시간 등 노동개혁	22
1.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정책 추진	22
2. 노사관계 관련 제도 쟁점사항 추진	22
3. 산업현장 전반의 법치 확립	22
4. 일자리 정책	22
II. 법원: 대법원 3대 노동사건과 차별 관련 분쟁	22
1. 통상임금 재직자 요건 사건	22
2. 사기업의 성과급 사건	23
3. 원청의 사용자성 사건	23
4. 차별관련 분쟁	23

Part 5 | 온라인플랫폼 및 AI 규제 동향

I. 온라인 맞춤형 광고 및 행태정보 활용 규제	24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글·메타에 행태정보 처리 관련 1000억원대 과징금 부과	24
2. 맞춤형 광고에 활용되는 온라인 행태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 발표	24
3. 시사점	25
II.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 움직임	25
1.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논의	25
2.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 내 부가통신지원팀 신설	26
3. 시사점	26
III. 앱 마켓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행위 제재	26
1. 방통위,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680억 부과 사전통지	26
2. 시사점	27
IV. AI 관련 법률(안) 동향	27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의 AI 법안	27
2. 개인정보 보호법상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권, 설명요구권 신설	27
3. 시사점	28
V. 정부의 AI 관련 정책방향 및 제도 마련	28
1. 개인정보위,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발표	28
2. 개인정보위, AI프라이버시팀 신설 및 사전적정성 검토제 시행	29
3. 문화체육관광부,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발간	29
4. 시사점	29

Part 6 | 제약바이오

I. 제약바이오 주요 규제	30
1. 경제적 이익제공 지출보고서 공개 - 한국형 선사인 액트	30
2. 의약품 GMP 단속 강화	31
II. 디지털화 가속화 동향	32
1. 디지털 의료제품법 시행	32
2. 첨단·분산형 임상시험 체계구축 및 임상데이터(RWD) 표준화·빅데이터 구축 (제약산업 육성 종합계획)	33
3. AI·빅데이터 신약개발(제약산업 육성 종합계획)	34
III. 제약바이오산업 지원 정책	36
1.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 및 제도화 추진(민생토론회 자료)	36
2. 필수의료 관련 (민생토론회 자료)	37
3. 의약품 수출전략 로드맵 수립	39
4.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	40

Part 7 | 선거와 경제

I. 2024 경제전망	42
1. 세계경제	42
2. 한국경제	43
II. 한국 22대 국회의원 총선 전망 및 영향	44
1. 총선	44
2. 총선 결과에 따른 전망	44
III. 미국 대선 및 글로벌 정세 전망	46
1. 선거 동향	46
2. 트럼프 당선 시 전망 및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48
3. 글로벌 정세	50

Part 1 | M&A 동향 및 추세

I. 2024년 M&A 전망

1. Player 별 동향

1) 전략적 투자자(SI) 동향

주력 사업의 성장 정체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최근 국내 주요 대기업은 AI·로봇 등 신사업 발굴 M&A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그러한 흐름 속에, 2024년에는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사업 재편을 위한 M&A가 보다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대기업의 바이오·제약 시장 진출 선언이 이어지면서, 수년간 소위 ‘투자 가뭄’에 시달렸던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실제 그러한 움직임이 한미약품, 레고캠바이오 건 등을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KRX 헬스케어지수(바이오·제약 75개 종목으로 구성) 시가총액이 2020년 약 258조원에서 2023년 약 180조원으로 30% 가량 감소한 가운데, 바이오 기업 가치가 하락 추세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기업이 주도하는 매수 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2) 재무적 투자자(FI) 동향

약 30조원에 이르는 펀드의 드라이파우더(dry powder, 미소진 약정액) 규모와 적체된 사모펀드 M&A 물량 등을 고려할 때, 2024년에는 재무적 투자자의 M&A 거래가 보다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저평가된 상장사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매수, 엑시트의 일환 또는 그 대안으로서 세컨더리 딜 또는 컨티뉴에이션 펀드(continuation fund, 펀드 만기 도래 시 동일한 GP가 해당 자산을 이전하기 위해 새롭게 결성하는 펀드) 거래 등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최근의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자본시장 변동성이 심화되자, 연기금과 대형 투자자(LP) 위주의 펀딩 흐름이 이어지면서, 이를 소화할 수 있는 대형 PEF 운용사에 자금이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운용사(GP)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운용사 간 공동투자 등 역시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산업별 동향

2024년에는 산업별로 건설업, 2차전지·반도체, 플랫폼 기업 분야에서 M&A가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가상자산·디지털데이터 등 산업과 보험업 관련 M&A도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1) 건설업

고금리 시기에도 외부 차입이 불가피했던 부동산 PF 이슈가 있는 건설사와 여기에 노출된 제2금융권 등에서 구조조정 관련 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2차전지·반도체

2차전지 및 반도체 관련 협력사들은 미국, 유럽 등에 생산시설을 설립해야 하는 필요성 등에 따라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이해됩니다.

3) 플랫폼 기업

온라인 플랫폼 사업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가치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일부 대기업들의 온라인 쇼핑몰 사업 등은 우선적인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사모펀드 투자를 받은 기업들 중 일부는 IPO(기업공개) 시장의 침체와 맞물려 거센 엑시트 압박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4) 가상자산·디지털데이터 등 산업

가상자산 및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기술을 갖춘 기업들 간 인수합병·협업 추세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기술 혁신을 이룬 기업에 대한 대기업 등의 관심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5) 보험업

현재 KDB생명을 비롯해 ABL생명, MG손해보험 등이 매각을 조율 중이며, 2024년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롯데손해보험과 동양생명의 매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매각 거래에는 비은행부문에서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금융지주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M&A 유형별 동향

1) 카브아웃 딜(carve-out deal)

최근 대기업들의 '유동성 확보' 정책에 따라 카브아웃 딜(주로 대기업의 특정 사업부 매각 거래)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구조조정 딜

경제 성장을 하락으로 인한 구조조정 관련 M&A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 분야 기업들은 경기 침체와 동산 경기 불황으로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계열사 매각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작년 기준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이자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이른바 '한계기업'이 3,903개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분석 대상 외감기업 전체(25,135개)의 약 15.5%를 차지하며, 직전년도 비율(14.9%)을 넘어섰습니다. 경기침체가 적어도 2025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위와 같은 부실기업이나 부실사업이 M&A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기타 - 아웃바운드 투자 확대 및 주주가치 제고 동향

그 외에도, 국내 기업들의 전략적 투자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크로스보더 M&A가 활발히 추진될 전망입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경우, 로봇틱스,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대한 아웃바운드 투자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최근 금융당국이 "주주가치 제고"를 강조하며 다양한 M&A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어 관련 제도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이에 대한 대주주의 대응, 행동주의 펀드를 포함한 소수주주의 권리행사 및 value-up M&A 전개 추세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II. M&A 규제 동향

1. 기업결합 관련 규제 변화

1)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 확대(예정)

2024. 1. 25.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경쟁 제한 우려가 희박한 다음 네 가지 기업결합 유형은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면제될 예정입니다. 본 개정안은 현재 공포 전이므로, 시행일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i) PEF 설립

(ii)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양도

(iii) 다른 회사 임원 총수의 1/3 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행위

(iv) 계열회사 간 합병 시 합병되는 회사 자체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경우

2)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예정)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 11. 15. 행정예고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디지털 서비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기업결합 심사기준이 새롭게 규정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시행될 예정입니다.

(i) 시장획정: (i) 명목상 무료 서비스(서비스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고 광고시청 등으로 대가를 받는 유형)가 제공되는 경우의 시장획정 방식 명시, (ii) 다면시장 획정 기준 신설, (iii) 혁신시장 획정 예시 보강

(ii) 경쟁제한 우려 평가 방식 정비: (i) 네트워크 효과 고려, (ii) 명목상 무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의 경쟁제한성 평가기준 신설, (iii) 혼합결합의 경쟁제한성 평가방식을 끼워팔기 중심으로 정비

(iii) 효율성 증대효과 예시 보완: 디지털 경제 특유의 효율성 증대효과 예시 추가(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경쟁제한 우려뿐만 아니라 혁신 창출 등의 긍정적 효과 역시 균형있게 평가되도록 함

2. 상장회사의 소수주주 권리 보호·강화

1) 물적분할 규제 강화

물적분할 시, 분할되는 회사(모회사) 일반 주주들의 분할신설회사(자회사) 주주권 상실과 모회사 주가 하락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i)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상장회사의 주주가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경우, 해당 주주는 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회사 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ii) 공시 강화: 물적분할을 추진하려는 회사는 분할의 구체적인 목적, 기대효과 및 주주보호방안을 충실히 공시하여야 합니다. 특히 해당 자회사의 상장을 계획하는 경우 예상 일정 등을 상세히 공시하여야 합니다.

(iii) 상장심사 강화: 물적분할 이후 5년 이내에 자회사를 상장하려는 경우, 거래소는 모회사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노력을 심사하고 그 노력이 미흡한 경우 상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임직원 스톡옵션 의무보유(lock-up) 제도 도입

기존에는 상장 전에 회사의 임원,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등이 취득한 스톡옵션의 경우, 이를 상장 후에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은 의무보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상장회사의 임원 등이 상장 직후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전량 매각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 (i) 의무보유 대상 및 대상자 확대: 임원 등이 상장 이전에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상장 이후에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되었고, 그 대상자에 업무집행지시자도 추가되었습니다.
- (ii) 의무보유 기간 차등화 가능(코스피 법인에도 확대 적용): 의무보유기간 만료 시 매도 집중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임원 등의 의무보유기간을 차등화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iii) 공시 강화: 상장 시 증권신고서 등을 통해, 의무보유 대상자, 대상자별 주식 등의 내역과 보유기간 등이 투명하게 공시되도록 하였습니다.

3) 자기주식 관련 규제(예정)

상장회사의 자기주식과 관련하여, 인적분할 시 분할되는 회사의 자기주식에도 분할신설회사의 신주를 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소위 “자사주 마법”). 이에 대응하여, 자기주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제가 강화될 예정입니다(이르면 2024년 상반기 시행 예정).

- (i)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제한: 상장회사가 인적분할을 하는 경우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하고, 분할신설회사가 재상장을 시도하는 경우 거래소는 배당 확대 등 종합적인 투자자 보호방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 (ii) 자기주식 취득·보유·처분 등 전 과정에 대한 공시 강화: 자기주식 보유 규모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자기주식 처분 시 주요사항보고서 공시 내용을 강화하며, 자기주식을 제외한 시가총액 정보를 일정 주기로 투자자에게 제공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iii) 자기주식 신탁 취득 시 규제 강화: 직접 취득과 비교하여 규제가 완화되어 있는 자기주식 신탁 취득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4)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의무 도입(예정)

상장회사의 핵심 관계자인 주요주주, 임원 등이 회사의 주식을 거래할 경우, 주가 급락 및 소수 주주의 손실 우려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내부자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제가 강화될 예정입니다(2024. 7. 24. 시행 예정).

- (i) 사전 공시의무: 상장회사의 주요주주, 임원 등이 해당 회사 주식을 거래할 계획이 있을 경우, 그 계획을 사전에 공시하여야 합니다(기존에는 사후 공시 의무만 있었음).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 (ii)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사장 등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등을 의미함.

5) 의무공개매수제도(예정)

금융위원회는 2022. 12. 최대주주가 주식양수도 방식으로 경영권을 이전하는 경우, 잔여 주주를 대상으로 공개매수를 실시할 의무를 도입하였고, 이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2023. 5. 30. 발의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다만 현재 해당 법률안이 국회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므로, 관련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i) 의무공개매수 적용대상: 상장회사 주식 25% 이상을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해당 취득가격과 동일한 금액으로, 발행주식총수의 50% + 1주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공개매수 방식으로 잔여 주주로부터 매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ii)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취득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되고, 처분명령 및 행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합병가액 산정 방식 변경(예정)

금융위원회는 M&A 선진화를 위한 우선 과제 중 하나로 합병가액 적정성 확보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법령 등 개정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 1) 외부평가기관에 대한 행위규율 마련: 합병가액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외부평가기관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위규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2) 합병가액 산정방법의 유연성 제고: 비계열사간 합병의 경우 합병가액 산정방법을 자율화(단, 제3자 외부평가를 원칙으로 함)할 예정이며, 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서는 일반주주 피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시장 영향 등을 살펴 추후 자율화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3) 상장-비상장회사 간 합병 시 우회상장 심사기준 합리화: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도 간 이합병을 우회상장 심사대상에 포함시키고, 비상장회사의 주식가치가 상장회사보다 큰 경우에도 우회상장 심사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4. Cross-border 딜 관련 국내외 규제 주목

최근 미국, EU 등이 국가 안보 및 전략적 자산 보호 등을 강조하며 외국인투자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크로스보더 M&A를 추진하기에 앞서 관련 국가의 규제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국외 규제 동향

- (i)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조사 기준 강화: 최근 미국 CFIUS가 외국인 투자 심사 기준을 강화하면서, 다른 국가로의 기술 유출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실제로 그로 인해 자발적으로 신고를 철회(거래포기)하는 투자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ii) EU 역외보조금 규정 시행: EU는 2023. 7. 역외보조금 규정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외국기업이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과도한 보조금을 받을 경우, EU 내 기업의 인수합병 및 공공입찰 참여가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됩니다. 그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기업 결합의 경우 사전신고 의무가 부과되므로, EU 전략산업인 철강·알루미늄, 인프라, 조선·항공, 기술, 에너지 등의 산업은 해당 규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iii) EU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그 외에도 EU는 필수핵심원자재(희토류, 전기차 배터리용 리

튴 등 34개 원자재)에 대한 제3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과 역내 생산기업에 혜택을 부여하는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등을 시행하거나 시행 예정에 있는 등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국내 규제 동향

- (i) 외국인 투자에 대한 안보심의 절차 실질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신고서가 제출되는 경우,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안보심의절차가 (선별적으로 개시되던 기존과 달리) 자동으로 개시되고, 해당 심의 결과 투자가 허용되는 경우에만 외국인투자신고가 수리되는 것으로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안보심의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최종 결정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이는 M&A 거래 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ii)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² 이 2023. 6. 2. 구체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술을 보유하는 법인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사전에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iii) 전략물자 지정근거 확대(예정): 대외무역법에 명시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의해서만 지정되던 전략물자를,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 통제 공고'에 의해서도 지정될 수 있도록 그 근거가 확대될 예정입니다(대외무역법 개정안이 2024. 1. 25.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이르면 2024년 내 시행 예정).

²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술(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바이오 등)을 의미함.

Part 2 | 건설부동산

I. PF 대출 부실로 인한 분쟁 증가

1. PF(Project Financing) 대출의 구조

PF대출은 현재의 사업 및 미래의 사업 계획의 현금흐름과 해당 사업의 리스크를 분석·평가하여, 현금흐름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을 최소화하고 위험이 최소화된 현재/미래의 현금흐름을 순현재가치(NPV)로 환산하여 사업의 가치를 계산한 후 대출액을 결정하는 금융기법입니다.

현재 이루어 지는 PF대출은 크게 브릿지론과 본PF로 분류됩니다.

브릿지론은 개발사업 초기에 토지매입 등을 위해 시행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자금이며, 본PF는 인허가 등이 진행된 후 착공 시점에 대출받는 자금으로 건물준공에 필요한 공사비 등 각종 사업비를 포함합니다. 차주인 시행사는 본PF로 브릿지론을 상환하고, 착공 이후 분양 또는 자산매각에 의해 발생하는 수입으로 본PF를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브릿지론은 1년 내외의 단기 대출로 사업부지 미확보, 인허가 지연, 시공사 및 대주단 미확보 등으로 본PF에 실패할 경우 시행사의 원리금이 연체되며 부실화되므로 본PF에 비해 리스크가 큰 상품입니다.

2. PF(Project Financing) 대출의 현황

외환위기 이전에는 건설사들이 직접 자금을 차입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은 물론 시행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건설사의 부채비율이 높아진 상태에서 외환위기로 금리가 높아지고 건설경기가 침체되면서 많은 건설사들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건설사는 직접 자금을 차입하지 않고 시행사가 PF대출로 자금을 차입하고 건설사는 보증 등 신용만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금리가 높아지고 건설경기가 침체되면서 부동산 PF대출이 부실화되고 보증 등을 제공한 건설사들 중 일부는 구조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부동산 PF대출에서 저축은행이나 건설사의 역할은 축소된 반면 증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새마을금고, 신협 등의 역할은 확대되었고 건설사들은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는 정도의 신용만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이후 건설경기의 장기간 호황으로 인하여 사업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약화되었고 건설사들의 수주경쟁이 심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건설사들은 수주를 위하여 본PF대출에 대하여 책임준공 외에도 책임분양, 책임착공 등 과도한 신용제공을 하였습니다. 또한 건설사들은 인허가가 이루어지기 전의 브릿지론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보증 등 신용보강을 제공하였습니다.

금융기관들도 PF대출의 규모를 확대하여 토지대뿐만 아니라 공사비 등 사업비도 대출해 주었고, 위험이 높은 브릿지론도 적극적으로 취급하였습니다.

또한 PF대출은 과거 주로 주택건설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건설경기 호황과 그에 따른 주택건설에 대한 규제로 인하여 주택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물류단지 등으로 확대되었고, 수도권 택지부족으로 인하여 지방사업장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한 금융비용 상승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상승으로 인하여 건설원가는 증가한 반면,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매출이 둔화되어 부동산 PF의 부실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성 악화로 착공조차 못하여 본PF에 이르지 못한 브릿지론의 부실화가 더욱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PF 부실화로 인한 부담때문에 최근 1군 건설사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기도 하였습니다.

3. PF(Project Financing) 대출 부실화로 인하여 예상되는 법률상 분쟁

1) 건설사들과 대주 사이의 분쟁

시공사인 건설사들은 브릿지론에 대하여 단순 보증을 하기도 하고, 본PF에 대하여 책임준공뿐만 아니라 책임착공, 책임분양, 일정 수준 이상의 분양율을 담보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차주인 시행사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대출약정이 대주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으며 비교적 명확하게 작성되어 있어서 건설사들과 대주 사이의 대출약정의 해석을 둘러싼 분쟁은 크지 않을 듯합니다.

그러나 시공사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된 후 채권자 협의회의 의결을 통하여 공동관리절차(이른바 이하 “워크아웃”)가 개시될 경우의 법률관계가 문제됩니다.

시공사의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채권단 협의회의 결의에 따라 대주단의 시공사에 대한 권리가 변경되거나 유예되므로, 채권단 협의회의 결의내용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해석이 분쟁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설사의 경우에는 PF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 및 워크아웃 건설사 MOU 가이드라인에 따라 PF현장별 자율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고, 주채권자와 PF대주단 사이의 법률관계가 문제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건설사와 시행사 사이의 분쟁

건설사가 대출약정에 따라 대주에게 시행사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변제한 경우 차주인 시행사에 대한 구상권행사 관련 분쟁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건설사는 변제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대주가 가지고 있던 담보권을 실행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려고 할 것이고, 차주인 시행사는 대출금 미변제의 책임을 시공사에게 미루면서 구상권 행사를 저지하려고 할 것인바, 대출약정상 기한이익 상실사유의 발생원인, 수급인의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의 성부, 유치권의 성부, 주식질권실행과 관련된 내용이 분쟁의 주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시행사와 대주, 신탁사 사이의 분쟁

건설사가 대주에 대하여 책임준공의무 등을 이행하여 대출채무를 직접 부담하지 않는 경우 차주인 시행사와 대주, 신탁사 사이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행사가 대출금 변제의무 자체를 다투기는 쉽지 않을 것이나, 시행사가 신탁계약에 따른 공매절차 등을 다투거나 시행사가 유치권 등을 이유로 건물의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공매절차 등을 사실상 방해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공동수급체인 건설사들 사이의 분쟁

건설사들이 공동수급체를 이루는 경우에는 건설사들 사이의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수급체 중 하나의 건설회사에 대한 워크아웃절차가 개시된 경우, 나머지 건설사들이 대주에 대하여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 중인 건설사의 지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지,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 중인 건설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책임을 대신 이행한 후 취득한 구상금채권이 워크아웃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거나 유예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5) 신탁사와 대주 사이의 분쟁

신탁회사가 차입형 내지 관리형 토지신탁을 진행하면서 대주에 대하여 책임준공이행확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부실화 될 경우, 신탁사가 대주에 대하여 신탁재산뿐만 아니라 고유재산으로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대주에 대하여 책임준공의무를 중복하여 부담하는 건설사들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이 문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II.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법률 제19847호로 제정되어 2024. 4. 27. 시행예정입니다.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이상의 택지인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재건축 등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를 위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용적률, 용도지역 등 도시·건축규제 완화, 절차의 간소화, 보조 및 지원 등의 특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고 곧 제정될 시행령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재건축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용이해질 것입니다.

다만, 하나의 주택단지 재건축이 아니라 다수의 주택단지를 통합개발하는 것이므로 각 단지별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선도지구를 지정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예정하고 있으며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4년 중에 선도지구가 지정될 수 있습니다.

Part 3 | 금융소송

I. 사모펀드 사태 이후 최근 판례 추세 및 2024년 전망

1.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및 투자자 소송

2019년 이후 이른바 5대 사모펀드라고 불리는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독일헤리티지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 외에도 Gen2펀드, 피델리스펀드, 트랜스아시아무역금융펀드, UK펀드, 아룸드리펀드 등 다수의 사모펀드가 환매 중단되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2020. 6. 30. 라임펀드(무역금융펀드)에 대해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최초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투자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분조위는 2021. 4. 5. 옵티머스펀드, 2021. 5. 24. 디스커버리펀드, 2022. 6. 13.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2022. 11. 21. 독일헤리티지펀드에 대해 순차적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독일헤리티지펀드에 대해서는 착오에 의한 취소를 인정하여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결정한 반면, 디스커버리펀드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에 대해서는 투자원금 중 일부에 대한 손해배상을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라임펀드 분조위 조정결정은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것으로 그 외의 라임펀드(테티스펀드, 플로토티펀드, CI펀드)에 대해서는 조정결정이 없었고, 분조위는 옵티머스펀드와 헤리티지펀드의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법원에서의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분조위 결정 이후 투자자들의 판매사(투자중개업자), 운용사(집합투자업자) 등을 상대로 한 소 제기가 본격화되었고, 특히 라임펀드와 옵티머스펀드 투자자 소송의 경우 이미 여러 건의 하급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하급심 판결 동향

사모펀드 투자자 소송에서 확인되는 공통된 청구원인은 ① 사기 또는 착오 취소에 기한 부당이익 반환 청구와 ②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등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後者は 펀드 투자자 소송에서 종래부터 있었던 전형적인 청구원인이거나, 前者는 종래에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청구원인으로서 이른바 ‘항공기펀드’ 사건(서울고등법원 2014다60608호) 이후 간혹 발견되다가, 라임펀드 분조위 조정결정 이후에는 거의 모든 펀드 투자자 소송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청구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아직까지 법리적으로 불명확하고 정리되지 않은 쟁점이 있기에 주로 前者의 영역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주된 법리적 쟁점은 크게 2가지입니다.

1) 투자자와 판매사(투자중개업자) 사이에 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이는 투자자와 판매사(투자중개업자) 간에 수익증권 매매계약이 존재한다고 한 간접투자자산운용법하의 대법원판례가 자본시장법하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기로 합니다.

2) 판매사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할 현존이익이 존재하는지?

즉 판매사는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그대로 수탁회사에게 전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운용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는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한 경우 그 금전을 취득한 수익자의 현존이익 추정이 반복될 수 있다.”는 대법원판례(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44488 판결)가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지 이에 관한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투자자와 판매사의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i) 종래 대법원판례에 따라 수익증권 매매계약의 존재를 인정한 경우와 (ii) 수익증권 매매계약의 존재를 부정하되, 투자자와 판매사 사이에 다른 형태의 계약(무명계약 혹은 펀드 가입계약)의 존재를 인정한 경우로 나뉩니다.

또한 현존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판매사가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수탁회사에 그대로 전달한 이상 판매사에게는 현존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과 당초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처에 투자금이 운용되지 않은 이상 현존이익 추정을 반복할 수 없다는 판단이 엇갈립니다.

현재까지의 하급심의 판단은 3가지 형태로 나뉘고 있습니다.

- ① 수익증권 매매계약(O), 착오 취소(O), 현존이익(O), 부당이득반환의무(O)
- ② 수익증권 매매계약(O), 착오 취소(O), 현존이익(X), 부당이득반환의무(X), 손해배상의무(O)
- ③ 수익증권 매매계약(X), 착오 취소(X), 현존이익(X), 부당이득반환의무(X), 손해배상의무(O)

3. 2024년 전망

자본시장법하에서 펀드와 관련한 법률 쟁점이 대법원에서 정리되기 전까지 하급심의 판단은 계속하여 엇갈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모펀드 투자자 소송 중에는 라임펀드 투자자 소송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판단을 달리하는 2건이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건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인용한 경우이고 다른 1건은 이를 기각하고 손해배상청구만 인용한 사례입니다.

다만 대법원 판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옵티머스펀드 등 다른 사모펀드 투자자 소송도 대법원에서 같이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금년 중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울러 소멸시효의 문제 등으로 다른 사모펀드 투자자 소송도 계속하여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금융기관간 소송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펀드는 구조적으로 판매사, 운용사, 수탁회사 등 여러 금융기관이 참여하게 되고,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경우에는 펀드, DLS, 특정 금융 신탁 등 여러 단계의 거래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금융기관간 책임 추궁 내지 책임 분담을 위한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II. 책임준공이행확약 관련 잠재적 위험(부동산PF 부실과 맞물려 폭발성 있음)

1. 부동산신탁회사의 책임준공확약의 일반적인 현황

국내 대형 건설사가 아닌 중소형 건설사가 시공을 맡은 부동산개발사업장의 경우 PF 대주단은 건설사의 책임준공확약에 추가하여 신탁회사의 책임준공확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탁회사의 책임준공확약의 일반적인 내용은 시공사가 일정 기한 내에 준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부터 일정 기한 내에 신탁회사가 준공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대주단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통상 신탁회사의 책임준공기한은 대출 만기일로 정하고 있으며, 대주단의 손해는 만기까지 회수되지 못한 미회수 대출원리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주단의 일반적인 주장입니다.

2. 2024년의 전망

우리나라 PF 부동산개발사업의 침체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공사 원가 상승이 시작된 2022년 말부터 이어져 오고 있으며, 중소 건설회사의 경우 공사대금 부족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 요구, 공사 중단, 그로 인한 사업성 하락 등의 사태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태영건설 사태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정부가 여러 정책을 통해 PF 부실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실효성있는 대책은 없었고 사실상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출 회수를 미루도록 하는 정도였습니다. 실제 다수의 PF사업장에서 금융기관들이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총선 이후에는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의 다른 경제적 불황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금융기관의 대출 회수 진행이 불가피할 것이고, 그에 따라 중소형 건설회사가 참여한 다수의 PF사업장은 정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신탁회사의 책임준공확약과 관련하여 대주단을 비롯한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법적 분쟁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주된 법적 분쟁 및 대책

현재 다수의 PF 사업장에서 금융기관은 대출의 만기를 연장해 주어 대출 회수를 유예해 주고 있으나 유독 신탁회사에 대해서는 책임준공기한을 연장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신탁회사의 책임준공기한이 연장된 만기일보다 먼저 도래하는 모순된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어차피 공사 중단, 미분양으로 인한 사업성 하락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소형 건설회사는 사실상 자력이 없어 대주단으로서는 신탁회사에 대해 책임준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형태의 법적 분쟁이 예상됩니다.

아직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신탁회사의 책임준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격, 그 내용과 범위 등에 관해 명시적으로 판결을 한 사례가 없습니다.

또한 책임준공확약은 신탁회사마다, 사업장마다 조금씩 그 내용이 상이합니다.

시공사의 경우 공사대금 중 일부를 PF 대출금으로 지급받는다든 점에서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 대주단의 대출원리금 상당의 손해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신탁회사는 실제 PF 대출금으로부터 직접적인 이득을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탁회사는 자본시장법상 손실보장약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로 인해 신탁회사의 책임준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 책임준공기한은 도과하였으나 만기일 이전에 책임준공의무를 다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인지, 책임져야 할 손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미회수 대출원리금 전액인지, 아니면 PF 대출에 공여된 담보의 가치를 고려하여 대주단의 실제 손해로 볼 것인지) 등에 관해 치열한 법적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III. M&A, 투자 분쟁 판례 및 앞으로의 전망

1. 최근 M&A 분쟁 판례 및 시사점

글로벌 M&A 시장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침체되었다가 2021년 급격히 회복하여 거래규모와 거래건수에서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과 2023년 연속으로 거래가 급감하였습니다. 국내 M&A시장도 이와 유사한 추세를 보였습니다. 2023년에는 금리 상승 및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등으로 국내외 M&A 규모가 감소했다고 평가됩니다. 이러한 대외적 변수에 의한 격변기를 거치면서, 인수대상회사의 상태, 가치, 전망도 장기적으로 또는 단기적으로 급변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대외적 변수로 촉발되었으나 그것이 대내적 요인과 결합하면서 대상회사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는 경우도 늘어났습니다.

아래에서 보듯, 위 기간 동안 선례가 될 만한 주요 소송들이 있었습니다.

1) 미래에셋자산운용(매수인) vs 안방보험(매도인) 소송, 매매목적물 미국 내 호텔, 리조트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안방보험이 체결한 호텔인수계약의 거래종결이 가능한지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안방보험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반면, 안방보험은 계약이행청구를 하였습니다.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서 진행된 위 소송은 2021. 12. 미래에셋 측의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매도인인 안방보험 측이 매수인 거래종결의무 선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였고, 그 구체적인 사유로 i) 매수인(미래에셋)의 동의 없이 호텔폐쇄 및 직원 해고 등을 하였고, 그것이 통상적 영업확약 위반이라는 점, ii) 매각대상 호텔에 대한 권원보험을 발급받지 못하였고, 그것이 진술보장위반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2) 현대산업개발(인수인) vs 아시아나항공(대상회사) 소송, 인수목적물 아시아나항공

현대산업개발과 아시아나항공이 체결한 신주인수계약의 거래종결이 가능한지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아시아나항공은 현대산업개발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반환의무부존재 확인청구를 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된 위 소송은 2022. 11. 아시아나항공 측 1심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입니다. 위 1심에서 매수인 거래종결의무 선행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가 다투어졌고, 그 구체적 사유로 i) 진술보장의무 위반, ii) 확약위반 등이 주장되었는데,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가치가 기준재무제표 기

준일 이후 급격히 변동되는 등 아시아나항공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여 매수인 거래종결 의무 선 행조건이 미충족되었다는 주장이 개진되어 다투어지고 있습니다.

3) 제주항공(매수인) vs 이스타홀딩스(매도인) 소송, 매매목적물 이스타항공

코로나19 발병 이후 여러 사유로 이스타항공의 사정이 악화되었는데, 제주항공은 이스타홀딩스와 체결한 이스타항공 인수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된 위 소송은 2023. 1. 제주항공 측 1심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2024. 1. 제주항공 측 승소가 유지되었으나, 금액은 상당수준으로 감액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도 매수인 거래종결의무가 다투어졌고, 매도인 측의 진술보장의무위반 원인(매수인 측 지시가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최근 M&A 분쟁 사례들을 보면, 매수인 거래종결의무 선행조건이 충족되었는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변경된 사정에 대한 위험분배를 누구에게 할 것인지 정하는 문제입니다. 위험분배에 관한 M&A 계약의 문언, 구조가 궁극적으로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 확인 및 검토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2. 최근 투자 분쟁 판례 및 시사점

국내 IPO시장은 2020년까지 침체기를 이어가다가, 2021년 폭발적으로 규모가 증가하게 되었으나 2022년 하향세를 그리다가 2023년 금액기준으로 전년대비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유상증자 시장도 2021년 크게 성장하였다가 2022년과 2023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금리상승세가 지속되어 IPO와 유상증자 규모가 전년대비 감소하였다고 평가됩니다. 이러한 자본시장의 침체기 속에서 종전에 집행된 투자에 대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주주평등원칙에 대한 2건의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그 법리의 적용이 주요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1)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

대법원은 주주평등원칙을 위반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나, 법률이 허용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르거나 그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고, 나아가 차등적 취급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차등적 취급의 구체적 내용, 회사가 차등적 취급을 하게 된 경위와 목적, 차등적 취급이 회사 및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였는지 여부와 정도, 일부 주주에 대한 차등적 취급이 상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를 두었는지 아니면 강행법규에 저촉되거나 채권자보다 후순위에 있는 주주의 본질적 지위를 부정하는지 여부, (중략) 차등적 취급에 따라 다른 주주가 입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개별 주주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차등적 취급으로 불이익을 입게 되는 주주의 동의 여부와 전반적인 동의율, 그 밖에 회사의 상장 여부, 사업목적, 지배구조, 사업현황, 재무상태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일부 주주에게 우월적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주주를 차등적 취급하는 것이 주주와 회사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따져서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위 사건에서는 일부 주주의 사전동의권(원고의 최종 주당인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상증자 등을 하거나 납입 자본금의 증가 또는 감소 등 주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원고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원고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 등)을 통한 감시기회의 부여가 모든 주주에게 이익이 되므로 차등적 취급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0778 판결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피고 회사가 연구·개발 중인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제에 대하여 약정 기한내 질병관리본부에 제품등록 등을 하지 못한 경우에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어서, 설령 피고 회사의 기존 주주들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들과 피고 회사의 법률관계에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였습니다.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형태의 투자에서 기존 주요주주와 신규주주가 주주간계약을 체결할 때 주주평등원칙의 적용 여부는 앞으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에서 주주평등원칙의 원칙과 예외에 관한 법리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으므로, 앞으로 다양한 적용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3. 앞으로의 전망

2020년 이후 자본시장에 급격한 변동이 있었고 2024년에도 그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여파로 M&A, 투자 부분의 다양한 분쟁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수인 거래 종결의무에 관한 쟁점, 주주평등원칙에 관한 쟁점 등은 앞으로도 계속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선례가 충분히 집적된 쟁점들이 아니므로, 앞으로 주요 판례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Part 4 | 인사노무

I. 정부: 근로시간 등 노동개혁

1.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정책 추진

현행 주 52시간제는 유지하되, 일부 직종, 업종에 대해 유연한 근로시간 적용방안이 추진됩니다. 예를 들어 월/분기/반기 단위 등으로 근로시간을 규제하는 방식이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 논의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노사관계 관련 제도 쟁점사항 추진

공무원 노동조합의 타임오프 적용범위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여 근로자대표의 선출방식을 명확하게 하고, 그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4월 총선 이후 노란봉투법의 입법이 재추진될 수 있습니다. 입법이 되면, 교섭창구단일화 등 단체 교섭제도에 관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산업현장 전반의 법치 확립

정부는 상습 임금체불, 중대재해,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하여 엄정대응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직장 내 괴롭힘, 청년의 박탈감을 유발하는 채용비리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4. 일자리 정책

정부는 금년도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이 원활한 활력있는 노동시장, 공정·상식·안전의 노동시장을 구축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청년일자리(맞춤형 지원 확대), 여성의 경력단절(육아휴직 지원강화 등), 퇴직한 중장년 일자리 로드맵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II. 법원: 대법원 3대 노동사건과 차별 관련 분쟁

1. 통상임금 재직자 요건 사건

대법원이 기존에 지급 시 재직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둔 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이 부정된다는 법리를 정립한 바 있는데, 이러한 법리가 반복될 것이냐가 관건인 사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으로 조만간 결론이 나온다는 전망이 많습니다(대법원 2019다204876). 그 결론에 따라 과거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재직자 요건 등을 통하여 통상임금 문제를 정리하였던 많은 회사들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일한 쟁점의 여러 사건들이 하급심에 계류 중이고, 대법원의 결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 사기업의 성과급 사건

사기업의 성과급을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인정하여, 퇴직금 산정 시 산입해야 하는지가 쟁점인 사건입니다. 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되면,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여 차액분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향후에도 계속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므로 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엄청날 전망입니다. 현재 하급심에 여러 사건들이 계류 중이고, 대법원의 결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대법원 2021다 248725).

3. 원청의 사용자성 사건

하청 노동조합에 대하여 원청이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으로 작년 입법이 추진된 노란봉투법과도 관련된 사건입니다(대법원 2018다296229). 기존 노동조합법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당사자 사이의 단체교섭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달리 법원에서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면 노동법의 체계가 완전히 달라지고, 원청으로서는 수많은 하청의 노동조합과도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고 하청에서 파업을 할 경우 대체 근로 금지 의무가 그대로 적용되는 부담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4. 차별 관련 분쟁

노동법에서 차별은 기간제법상 차별, 파견법상 차별,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 근로기준법상 차별이 문제가 되고, 관련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차별을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를 특정하는 것이 주로 쟁점이 되는데 최근 대법원은 기간제법상 차별시정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노동 위원회가 직권으로 비교대상 근로자를 판단할 수 있고, 실제 존재하지 않고 직제상으로만 상정할 수 있을 뿐 근로자로 특정한 것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함으로써 비교대상 근로자는 규범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두53952 판결). 이로써 차별을 인정받는 것이 보다 용이해졌고, 관련 분쟁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Part 5 | 온라인플랫폼 및 AI 규제 동향

I. 온라인 맞춤형 광고 및 행태정보 활용 규제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글·메타에 행태정보 처리 관련 1000억원대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빅테크 기업의 행태정보 활용과 관련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2. 9.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개인정보와 결합하여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1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구글과 메타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2. 맞춤형 광고에 활용되는 온라인 행태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 발표

또한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4. 1. 25. <맞춤형 광고에 활용되는 온라인 행태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사회단체, 산업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2024. 1. 31. <맞춤형 광고에 활용되는 온라인 행태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면서 기업이 법적 불확실성 없이 행태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번 정책 방안을 수립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정책 방안에 의하면, 행태정보를 처리하는 주요 이해관계자인 광고 사업자*와 광고 매체 사업자(웹·앱 사업자)**의 관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법하게 준수할 수 있는 행태정보 처리 유형별 준칙을 제시하였습니다.

* 광고 사업자: 자사 또는 타사의 웹사이트 및 앱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자사 또는 타사의 웹사이트 및 앱에 맞춤형 광고를 전송하는 사업자

** 광고 매체 사업자: 자사 웹사이트 및 앱 등의 일부 공간에 맞춤형 광고가 표시되도록 광고 지면을 제공하는 사업자

1) 광고 사업자의 주요 의무

‘광고 사업자’가 특정 개인을 식별하지 않고 행태정보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를 할 수 있지만, 행태정보 처리 과정에서 누적·중첩·결합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이밖에 투명성 확보·사후 통제권 제공, 안전조치 이행 등 권고조치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만일 개인을 식별하여 처리한다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광고 매체 사업자의 주요 의무

‘광고 매체 사업자’의 경우 자사의 맞춤형 광고를 목적으로 행태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광고 사업자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제3자가 수집도구를 통하여 행태정보를 수집하도록 광고 매체 사업자가 허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웹·앱에서 제3자가 수집해가는 행태정보에 대해 웹·앱별로 분리하여 개인 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3. 시사점

맞춤형 광고를 목적으로 활용되는 온라인 행태정보 처리에 관하여는 계속해서 논란이 있어왔고, 개인정보위는 이번 정책 방안을 바탕으로 행태정보를 처리하는 현장에서 적용할 구체적인 처리기준과 방법들을 민간과 협력하여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온라인 행태정보 보호 민·관 협의체'를 오는 1분기 중에 구성하고, 공동으로 작업하여 개정된 맞춤형 광고 가이드 라인을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므로, 이러한 개인정보위의 동향과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을 주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효과적인 맞춤형 광고 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확한 시장 상황과 행태정보 처리 관련 현황을 파악하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현황조사'를 올해 상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며, 올해 3월부터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와 연계하여 광고 사업자 및 광고 매체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태정보 수집·이용 사실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제대로 공개하고 있는지를 함께 점검할 계획이므로, 이러한 현황조사 및 점검에 대한 준비와 조치를 적절히 취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I.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 움직임

1.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논의

공정위는 「(가칭)플랫폼 경쟁촉진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으나 동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2024. 2. 6. 기준).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안은 지난 2023. 11.에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안」 등 다양한 법률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 위원회 등 주요 정부 부처와 협의하여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안에는 정량 요건과 정성 요건을 고려하여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예상되고 있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의 정량 요건은 '연매출액[회계상 매출(수수료)]이 국내총생산(GDP)의 0.075%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750만 명 이상인 플랫폼' 또는 '연 매출액이 GDP의 0.025% 이상이고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플랫폼'인데, 여기에 정성 요건인 '시장에 다른 플랫폼 사업자가 진출하는 것을 어렵게 하거나 좌절시킬 수 있을 정도로 시장지배력 및 영향력이 압도적일 것(구체적인 기준은 밝혀진 바 없음)'도 추가로 같이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안에는 자사우대,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의 행위 금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 법안이 오히려 플랫폼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고, 국내외 통상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규제의 범위와 내용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현재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치고 있으며, 최종안이 마무리되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2.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 내 부가통신지원팀 신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2023년 말 이용자정책국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과 시장조사심의관으로 분리하는 직제개편을 수행하였습니다. 시장조사심의관은 방통위의 조사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로 신설되었고, 시장조사심의관 내에 ‘부가통신지원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부가통신지원팀은 최근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 등 금지행위 위반 조사 및 제재업무,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제재업무, 앱 마켓 실태조사 및 부가통신서비스 시장 금지행위 모니터링 업무 등을 담당할 계획입니다.

3. 시사점

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방향을 자율규제로 설정하였으나,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의 규제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조직 내에서 이를 준수하기 위한 사전적인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III. 앱 마켓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행위 제재

1. 방통위,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680억 부과 사전통지

지난 2021. 9.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으로 앱 마켓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가 금지행위로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9호), 구글과 애플은 앱 사업자가 앱 내 콘텐츠 거래 시 ① 자사 인앱결제시스템(최대 30%의 수수료 부과)을 이용하거나, ② 제3자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더라도 최대 26%의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는 앱 마켓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10.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방통위는 지난 2023. 10. 6. 구글 및 애플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관련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정조치안을 사전통지 했습니다. 방통위는 앱 마켓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 및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게만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방통위는 시정조치안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청취와 방통위 심의와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을 비롯해 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 등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2. 시사점

2021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에도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 강제정책을 고수하면서, 제3자 결제서비스에 대해서도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발표하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해외 앱 마켓사업자 규제이지를 표명한 바, 향후 실제로 내려질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의 제재수위를 주목해볼만 합니다. 특히, 적절한 시정명령이 이루어진다면, 앱 사업자들은 보다 자유롭게 제3자 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앱 내 결제방식 선택의 자유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정부의 해외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에 따라,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기업은 한국 법률과 규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부적으로 컴플라이언스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활용하여 규제 준수에 대한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IV. AI 관련 법률(안) 동향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의 AI 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서 발의한 AI 법안이 작년 2월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현재 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계류중으로, 2024년 총선 전에 국회 심사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과기부가 과방위 전체회의에 제출하려는 AI 법안의 내용은 현재 비공개이나, 지난 11. 28. 과기부차관이 기자 간담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수정된 AI 법안은 작년 2월에 소위원회를 통과된 버전과 마찬가지로 (i) 고위험영역 AI 열거, (ii) 고위험영역 AI 사업자에 대한 신뢰성 확보 책무 부과 내용을 유지하고 있고, 여기에 (iii) 생성형 AI의 생성물에 대한 표기 의무(ex. 워터마크)가 자율규제 형태로 추가 되었다고 합니다.

과기부의 AI 법안에 고위험영역 AI 사업자에게 책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으나, 불이행시 제재 조항이 없는 등 전반적으로 AI 산업 규제보다는 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개인정보 보호법상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권, 설명요구권 신설

오는 2024. 3. 15.부터 시행될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조항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하여 정보주체에게 (i) 거부권 및 (ii) 설명요구권을 부여하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iii) 홈페이지 등 사전 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1. 23. 위 규 정의 시행령을 입법에 고하였습니다.

1) 거부권

개인정보 보호법은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정보주체에게 ‘거부권’을 인정합니다. 다만, 정보주체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는 경우 등에는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사전 공개 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자동화 결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과 절차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공개해야 합니다. 거부권과 달리,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전 공개 의무’와 정보주체의 ‘설명요구권’은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요구됩니다.

3) 설명요구권

2023. 11. 23. 입법예고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준으로 정보주체에게 제공해야 할 설명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만약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설명 요구에 대하여 ‘실제로 내려진 개별 결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야 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설명 요구에 대하여 ‘사전 공개 사항’을 제공하면 됩니다.

자동화된 결정	거부권	개별 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	사전 공개 의무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O	O	O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X	X (설명 요구에 사전 공개 사항 제공 가능)	O

3. 시사점

올해 3월 시행예정인 개인정보 보호법상 자동화된 결정에 관한 정보주체의 권리 조항은 주로 AI 채용 절차 · 자동화된 서비스 부정 이용자 제재 등 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화된 결정 조항의 적용 기준과 범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오는 3월까지 안내서로 정리하여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적절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절차를 구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V. 정부의 AI 관련 정책방향 및 제도 마련

1. 개인정보위,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발표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3. 8. 3. AI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AI 혁신 생태계 발전에 꼭 필요한 데이터는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수립, 발표하였습니다. 개인정보위는 AI 환경에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을 어떻게 해석·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준칙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규율체계를 공동 설계해 나가도록 하는 정책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2. 개인정보위, AI프라이버시팀 신설 및 사전적정성 검토제 시행

개인정보위는 변화 속도가 빠르고 데이터 활용 범위, 방식이 고도로 복잡한 AI에 대해 그 특성을 고려하여 규정 중심이 아닌 원칙(principle) 중심의 규율체계를 정립하고자, AI와 관련된 사항을 전담하는 원스톱 창구인 ‘AI 프라이버시팀’을 신설하였습니다. ‘AI 프라이버시팀’에서는 AI모델·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사업자와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사안별로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안전성 등에 대한 법령해석을 지원하거나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컨설팅역할을 수행하여 불확실성을 대폭 축소하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3. 10. 13. ‘사전 적정성 검토제’를 도입하여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 적정성 검토제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방안을 PIPC와 사업자가 함께 마련하고, 이를 사업자가 적정하게 적용하였다면 추후 환경·사정 변화가 없는 한 조사권을 행사하지 않는 제도로, 사업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적용방안 통보까지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하여 민간에서 느끼는 법적 리스크를 신속하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 문화체육관광부,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발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12. 27.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안내서는 A) AI 사업자, B) 저작권자, C) AI 서비스 이용자가 각 유의해야 할 사항을 i) AI 학습 단계와 ii) AI를 이용하여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단계로 나누어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AI 사업자는 학습 단계에서는 저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때 저작권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 이용권한을 확보해야 하며, 산출물 생성 단계에서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AI 학습에 이용되지 않도록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거나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AI 산출물의 도출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기술을 활용해야 합니다. AI 서비스 이용자는 기존 저작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AI로 생성된 산출물을 이용할 경우 적절한 표시를 해야 합니다.

4. 시사점

챗 GPT 등장 이후 의료, 교육,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활용한 서비스가 고도화되면서 AI가 가져오는 편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AI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알고리즘 편향성, 개인정보 보호 문제, 악용 가능성, 의사 결정의 비투명성 등이 주요 위험으로 지적되고 있고, 이를 관리하고 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방향과 제도마련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방향 및 관련 논의를 주시하여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유럽, 일본 등에서는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더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텍스트 및 데이터로부터 통계적인 규칙이나 패턴 등을 찾아내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이른바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TDM)’을 입법하는 움직임이 있고, 우리나라도 이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입법이 이루어지고 법원의 판례가 축적되기 전까지는 분쟁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Part 6 | 제약바이오

I. 2024 제약바이오 주요 규제

1. 경제적 이익제공 지출보고서 공개 – 한국형 선샤인 액트(K-Sunshine Act)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지출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출보고서란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및 유통업자 등(이하 이 주제에서 ‘제약회사등’)이 약사,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이하 “의료인등”)에게 약사법령, 의료기기법령에서 허용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그 내역을 작성한 것을 의미합니다(약사법 제47조의2, 의료기기법 제13조의2, 이하 ‘지출보고서’).

2018. 1. 1. 부터 시행된 지출보고서 제도는 미국의 선샤인 액트²를 벤치마킹하였기 때문에, 한국형 선샤인 액트(K-Sunshine Act)라고 불립니다. 당시 지출보고서 제도는 작성의 의무만 있었으나, 국회·언론 등에서 지출보고서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미국과 동일하게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에 2021. 7. 20. 약사법·의료기기법이 개정되어 지출보고서 실태조사·공표제도와 지출보고서 공개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2023년 시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약회사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지출보고서 공개 (2024년 시행)	제약회사등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의료인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고, 해당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한편, 현행 지출보고서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료인의 성명, 의료기관 명칭 등의 정보와 경제적 이익 범위·시기·장소 뿐만 아니라 제약회사등의 임상시험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출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영업비밀 침해가 될 수 있고, 공개로 인해 의료인등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으로 오인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지출보고서 공개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 12. 29. 같은 해 6~7월 실시한 2022년 제약회사등이 작성한 지출보고서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금번 조사 시 파악된 경제적 이익의 제공 정도, 유형 및 지출보고서 관리 방식 등을 기반으로 지출보고서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공개’ 제도를 수립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1 ①견본품 제공 ②학술대회 지원 ③임상시험 지원 ④제품설명회 ⑤시판 후 조사 ⑥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⑦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

2 The Affordable Care Act에 근거하여 의사 등에게 제공된 이익에 대한 공개를 담은 Open payments 제도

시사점

향후 제약회사들은 앞서 설명한 지출보고서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영업비밀 정보 침해 우려뿐만 아니라 지출보고서 내역에 관한 의료인등과의 분쟁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나아가, 매년 실시될 지출보고서 조사도 제도가 정착함에 따라 지난해와 같은 서면조사에 그치지 않고 현장조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약회사들은 제도 변화에 따른 지출보고서의 작성 및 증빙자료 관리 현황, 내부 지출보고서 관리 체계의 정합성에 관한 점검 필요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2. 의약품 GMP 단속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 11. 29. 특정 의약품 제조업체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이하 ‘GMP’) 위반을 이유로 GMP 기준의 적합 판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는 2022. 12. 개정 약사법에 따라 GMP 적합판정 취소제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적합판정 취소 처분이 시행된 사례입니다.

약사법상 의약품 제조업자는 반드시 GMP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 때 GMP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즉, 제조소의 구조·설비를 비롯하여 원자재의 구입에서부터 제조·포장·보관 및 출하에 이르기까지의 전 공정에 걸쳐 철저한 제조관리와 품질관리를 시행함으로써 우수 품질의 의약품을 생산·공급하도록 하는 기준을 의미합니다.

GMP는 1957년 말 독일에서 개발된 탈리도마이드(Thalidomide, 임산부의 입덧 방지 의약품) 부작용 발생을 계기로 의약품의 안전성과 품질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1963년 미국(FDA)에서 세계 최초로 GMP 기준을 제정한 뒤, 1969년 WHO가 GMP를 발표하고 회원국에게 GMP 도입을 권고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WHO의 권고와 세계의 흐름에 따라 1977년 GMP 기준을 제정하였고 처음에는 자율적인 규정이었으나 의무 규정으로 전환하였으며, 이후 세계 제약 환경의 발전에 맞춰 선진국 GMP와 동일 수준의 GMP로 전면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자는 의약품의 품목 제조허가를 받기 전 자신의 제조시설과 품질관리시스템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GMP 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하며(이하 ‘적합판정’),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의 품목 제조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의약품 제조 시 GMP 기준에 맞게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의약품 제조업자의 GMP 기준 위반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적합판정을 취소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영업정지 기간 이후에 다시 제조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의약품 제조업체가 GMP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GMP 적합 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약사법 제38조의2 등 신설;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

시사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GMP 제조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므로, GMP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II. 디지털화 가속화 동향

1. 디지털 의료제품법 시행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2023. 3. 31.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³,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매출 규모가 지난 2021년 전년 대비 34.6% 성장한 1조8227억원으로 해당 분야의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급격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등이 등장함에 따라 이에 맞는 정의뿐만 아니라 규제 및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었고, 이에 2024. 1. 23.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제정되었으며 2025. 1. 24. 시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법률은 디지털의료제품을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및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로 분류하고,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정의하였으며 제품 별로 세부 규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제조·수입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신고 사항 등에 대한 사전검토 요청할 수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속한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교육과 홍보와 전문인력 양성, 기술 등의 표준화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 근거도 정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의료제품 정의 및 주요 규제사항〉

구분	정의	규제
디지털 의료기기	지능정보기술, 로봇기술, 정보통신기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첨단 기술(이하 '디지털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또는 이 와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가 조합된 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 제조·수입업 영위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필요 · 위험성 등에 따라 허가·인증·신고 필요 · 취약점 보완, 보안지침 준수 의무 · 품질관리기준 준수 및 적합 판정 필요
디지털 융합의약품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과 디지털의료기기 또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가 조합된 의약품(다만, 주된 기능이 디지털의료기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제조·수입업 영위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필요 · 품목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필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디지털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의료의 지원 또는 건강의 유지·향상을 목적으로 생체신호를 모니터링·측정·수집 및 분석하거나, 생활습관을 기록·분석하여 식이·운동 등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디지털기술이 적용된 기구·기계·장치·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제품	· 제조·수입업 영위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 필요 · 제품의 성능인증 신청할 수 있음 · 유통관리계획 시행에 따라 유통 중 의료기기 검사 수집·의무

디지털 기술의 계속된 발전 속에서 디지털 의료 제품법의 제정은 해당 분야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닙니다. 새로운 디지털 기술과 혁신이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할 전망이지만, 동시에 다양한 규제가 도입될

3 임용우, 2021년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규모 1.8조...전년비 34.6%↑, 뉴스1, 2023. 3. 31.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업들은 기술 혁신을 추구하면서도 의료기기의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다양한 요건을 준수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예측하며 각종 규제사항을 면밀히 확인 등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사점

디지털 기술의 계속된 발전 속에서 디지털 의료 제품법의 제정은 해당 분야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닙니다. 새로운 디지털 기술과 혁신이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할 전망이지만, 동시에 다양한 규제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업들은 기술 혁신을 추구하면서도 의료기기의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다양한 요건을 준수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예측하며 각종 규제사항을 면밀히 확인 등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첨단·분산형 임상시험 체계구축 및 임상데이터(RWD) 표준화·빅데이터 구축 (제약산업 육성 종합계획)

1) 첨단·분산형 임상시험 체계구축

분산형 임상시험(Decentralized Clinical Trials, 이하 'DCT')이란 임상시험과 관련된 일부 또는 모든 활동이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아닌 참여자의 자택 등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임상시험을 말합니다.⁴ DCT는 기존 임상시험과 달리 대상자가 직접 시험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임상시험이 가능한 방식이므로 높은 임상시험 참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해외 주요국에서는 DCT가 이미 트렌드로 자리잡았고, DCT를 허용한 국가들은 앞으로 임상시험 소요 기간을 점차 단축해 환자들이 기다리는 치료제를 더 빠르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미국은(FDA) 2021. 12. '임상연구의 원격 데이터 수집을 위한 디지털헬스 기술'을 발간, 임상연구 데이터를 모바일 기기,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원격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임상시험 현황은 다국가 임상시험에서 세계 11위, 단일 국가로는 세계 3위라는 경쟁력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⁵ 따라서 우리나라도 글로벌 임상시험 시장 입지를 견고히 하기 위해 분산형 임상시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과 원스톱 스마트 임상시험 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2022. 4.), 분산형 임상시험 수행을 위한 핵심기술 및 지침서 개발 연구(2023. 12.)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도 2021년 글로벌 제약사, 국내 제약사, 대학병원 임상시험센터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고, DCT 관련 가이드라인(비대면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개발에 착수한 바 있어, 향후 우리나라도 DCT의 활용 범위 확대, 관련 규제 개선 등의 지속 논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보건복지부, 분산형 임상시험 도입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현황 점검 및 연구자 의견 청취, 2023. 12. 8.

5 최선, 한국 글로벌 임상 순위 5위...역대 최고 순위 갱신, 메디칼타임즈, 2023.4.14.

시사점

식품의약품안전처도 2021년 글로벌 제약사, 국내 제약사, 대학병원 임상시험센터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고, DCT 관련 가이드라인(비대면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개발에 착수한 바 있어, 향후 우리나라도 DCT의 활용 범위 확대, 관련 규제 개선 등의 지속 논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임상데이터(RWD) 표준화 · 빅데이터 구축

의료분야에서 실사용 데이터 (Real World Data, 이하 'RWD')는 다양한 자료원을 통하여 수집되는 환자, 건강상태, 보건의료체계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의미합니다. 그 예로서 건강보험 청구자료,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자료, 환자 등록정보 및 설문조사, 시판 후 조사자료 등이 있습니다. RWD를 분석하여 얻어진 의약품 등의 사용 및 잠재적인 유익성과 위해성에 관한 임상적인 증거는 RWE(Real World Evidence)라고 합니다. 결국 RWD와 RWE는 의약품의 개발과 약물감시 뿐만 아니라 적응증 확대와 보험약가 분야까지 폭넓은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표준화하고 정보를 축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FDA)의 경우 2018년부터 RWD를 활용한 신약개발 가속화 체계 구축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으며, 지난해 9월 '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제에 대한 규제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RWD·RWE 사용 시 고려 사항' 지침을 마련하고 데이터 접근 및 안전성 모니터링에 대한 권장 사항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⁶

시사점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21. 6. 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 연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며, 정부 합동으로 2023. 4.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을 통해 100만명 규모의 바이오 데이터를 수집·활용하는 인프라를 마련하고, RWD를 기반으로 하는 다기관 레지스트리 구축 및 메디컬트윈(가상공간을 활용한 맞춤형 치료 등) 기술을 통한 상태 예측 시뮬레이션 기술과 인공지능 개발 · 실증 연구를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3. AI · 빅데이터 신약개발(제약산업 육성 종합계획)

최근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기존의 전통적인 신약 개발 프로세스에 AI 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의약품을 개발하는 전략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약 개발은 대표적인 고위험 고수익(high risk high return) 분야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나, 성공률이 낮고 노동집약적이며, (글로벌 상위 12개 제약사 기준으로) 제품 출시 기간은 평균적으로 10~12년이 소요되고 개발 비용은 21억 6,800만 달러로 추산되고 있습니다.⁷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신약 개발에 AI 기술을 활용한다면, 후보물질 도출과 임상시험 등의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 시간이나 비용을 크게 감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로슈나얀센, 화이자

6 박도영, 美FDA가 발표한 허가신청 시 리얼월드데이터 사용 최종 지침 내용은, 메디게이트, 2023. 9. 2.

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의약 R&D 이슈보고서, 2023. 11.

(PFE), 바이엘 등 글로벌 빅파마 30곳 이상이 AI 업체와 협력해 신약개발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⁸ 그 중 구글이 설립한 인공지능(AI) 신약개발사 아이소모픽은 일라이릴리, 노바티스와 약 4조 원 규모의 저분자 합성약물 연구개발 협력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AI 신약개발 지원센터에 따르면, 현재 국내 AI 신약 개발 기업은 약 50여 개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⁹ 아직까지 국내의 AI 신약개발 시장은 미성숙한 단계이지만, 국가 정책을 통해 활발한 연구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2023. 3. 24. 발표한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AI 기술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약개발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신약개발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등의 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AI를 활용한 신약개발은 비용과 시간을 단축하며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에서도 제 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등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협업과 데이터 활용을 통해 AI 신약 개발을 더욱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AI 신약개발과 관련한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I 신약개발과 관련한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1	성공가능성 제고	● AI 신약개발 기술 로드맵 수립 및 성공사례 창출 지원 - 개발 단계별 AI 요소 기술 정립을 통한 AI 신약개발 기술로드맵 마련 - 공공 인공지능 플랫폼(KAIDD) 고도화 - 제약기업의 기술수요와 AI 기업의 기술공급 매칭 지원 ● AI 신약개발 플랫폼 개발로 신약개발 가속화 - 단백질구조 예측·항체 설계 가능한 '한국형 로제타폴드'(가칭) 구축 추진 ● 빅데이터 연합형 인공지능 플랫폼(FDD) 등 AI 활용 인프라 구축 - 다기관에 분산된 민감 데이터 활용 연합학습모델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지원
2	빅데이터 기반 신약 개발 생태계 조성	●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으로 신약개발·정밀의료 실현 - 100만명 규모 유전체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및 희귀 질환자 1.5만명 데이터제공 ● K-CURE*(임상데이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신약개발 연구지원 - 암 공공데이터 및 암 임상데이터(10대암환자165만명) 구축 ●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을 통한 연구지원 확대

시사점

향후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은 비용과 시간을 단축하며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에서도 제 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등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협업과 데이터 활용을 통해 AI 신약 개발을 더욱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8 한아름, [머니S리포트-AI에 빠진 제약·바이오 ②] 5년 걸리는 분석을 단 하루 만에... 가상임상도 가능, MoneyS, 2022. 1. 2.

9 손형민, [창간 22주년] 국내 AI 신약 개발 현 단계, '제약-AI' 협업 증가세, 메디컬업저버, 2023. 7. 11.

Ⅲ. 제약바이오산업 지원 정책

1.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 및 제도화 추진(민생토론회)

정부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상담 또는 처방(이하 '비대면진료')이 종료되면서 발생한 국민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2023. 6. 1. 부터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를 근거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2023. 1. 30. 7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최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제한된 진료대상, 의약품 배송문제, 이해관계 단체간 갈등 등의 쟁점으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비대면진료를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 글로벌 경쟁력 차원에서 접근하며,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산업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만큼, 보건의료 시장에서 이러한 변화를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주요내용〉

구분		내용			
1	대상환자	의원급 의료기관	대면진료 경험		●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예외적 허용	취약지역	● 섬·벽지 거주자 (「보험료 경감 고시」) ●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취약시간대	● (휴일)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야간)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
				취약계층	●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자에 한함)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 감염병 확진 환자(감염병예방법 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으로 확진되어 격리(권고 포함) 중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
		병원급 의료기관	대면진료 경험자	희귀질환자	● 동일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1년 이내)를 받은 환자로서, 「본인일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에 해당하는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적용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 동일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30일 이내)를 받은 환자로서,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검사결과의 설명에 한함
2	수가	● 의료기관: 진찰료+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진찰료의 30%, 3,780원 수준), ● 약국: 비대면조제 관리료 신설(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각 30% 수준, 1,030원 가산)			
3	진료방식	화상진료 원칙, 예외적으로 음성전화 가능			
4	처방전 전달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이메일 등 직접 송부, 앱을 이용하는 경우 처방전 다운로드 금지			
5	의약품수령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여 본인수령, 대리수령, 재택수령(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함) 중 결정			
6	전담기관	비대면진료만 실시하거나, 비대면조제만 실시하는 약국 운영 금지, 의료기관당 월 진료건수의 30%, 약국당 월 조제건수의 30% 제한			

시사점

최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제한된 진료대상, 의약품 배송문제, 이해관계 단체간 갈등 등의 쟁점으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비대면진료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 글로벌 경쟁력 차원에서 접근하며,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산업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만큼, 보건의료 시장에서 이러한 변화를 주지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민생토론회)

정부는 2024. 2. 1.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필수의료 위기를 구조적 문제로 판단하고, 장기간 축적된 복합적 과제로 인식하여, 단기적인 해법과 중·장기적인 구조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이번 발표는 종전 필수 의료 혁신 전략('23. 10. 19)의 이행을 좀더 구체화하여, ① 의사 수 확대를 필요조건으로 ② 필수의료 강화를 충분조건으로 한 4개의 정책 패키지를 내용으로 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금번 정책 패키지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혁 실천 로드맵 마련을 신속히 추진하고, 발표 예정인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패키지 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구체적인 필수의료 정책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주요 내용 주요 내용〉

	구분	내용
1	의료인력 확충	1) 인력 양성 혁신 ● 지역·필수의료 강화, 초고령 사회 등을 대비한 의사인력 수급 개선 ● 전공의 교육·수련 체계 혁신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2) 인력 운영 혁신 ● 전문의 중심의 병원 운영 지원 ● 의사가 이동 진료하는 공유형 진료체계 확립 ● 업무범위 개선 및 면허관리 선진화

2	지역의료 강화	1) 기능·수요 중심 협력적 전달체계 전환 ● 의료기관 유형별 기능 정립 ● 거점병원 책임의 권역 병·의원 진료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지역 내 협력 기반 의료 이용·공급 유도를 위한 건강보험 제도 개선 ● 초고령사회 대비한 일차, 회복기, 의료-돌봄 등 전달체계 확충 ●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병원 대상 평가·규제 혁신('24~)
		2) 안정적 지역 인력 확보 ●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율 상향(비수도권 의대정원 40% 이상 지역 선발 의무화) ● 지역의료 교육과정 신설·확대, 지역의료 수련 확대 및 지역 전공의 배정 ● 지역병원 육성을 통한 전문의 일자리 확충 및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추진
		3) 지역의료 투자 확대 ● '지역의료지도'(가칭) 기반 맞춤형 지역수가 도입·확대('24~) ● 필수의료 인력·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 검토
		4) 수도권 병상 관리 ●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방지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수도권 분원 관리체계 강화('24) ● 수도권 대형병원 등의 병상 적정관리, 재정 지원, 인력 배정(전공의 등) 연계
3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1)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 ● 의료사고 대상 공소 제한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추진('24) ● 특례법 도입 前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24)
		2) 피해자 권리구제체계 확립(소송 前 조정·중재 및 선제적 보상 활성화) ● '의료분쟁조정법'상 조정·중재 참여 거부 시 형사처벌 적용 제외 및 관련 제도 혁신 ● 모든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게 책임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종합보험·공제 개발, 보험료 지원방안(필수진료 료, 전공의 등) 마련 ● 공제 개발·운영 및 '의료기관안전공제회'(가칭) 설립 추진
		3)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 무과실 분만 사고 보상금 국가지원 확대(70→100%), 합리적인 보상금 한도 설정 ● 소아 진료 등 불가항력 의료사고 유형·사례 의학적 입증 시 적용 대상 확대 검토
		4) 응급실 안전 강화 ● 보안인력 채용, 검색대 설치 등 안전관리 비용 지원을 위한 응급실 환자·의료진 안전관리 보상 강화('24) ● 응급실 보안 검색, 주취자·정신질환자 신체 보호장구 사용 법적 근거 마련('25)

4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1) 공정하고 충분한 필수의료 보상 - 필수의료 항목의 상대가치 점수 선별·집중 인상 기전 마련('24) - 필수의료 특성 고려시 수가 반영이 곤란한 시간·자원의 소모량 중심으로 수가 산정체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정책수가' 도입·확산('24) -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중증·필수 인프라 유지 보상(사후보전), 협력 네트워크 보상 등 지불제도 다변화 추진(혁신계정 신설, '24)
		2) 비급여 관리체계 확립 - 혼합진료, 모니터링, 의료질·안전 확보 등 관리체계 강화 - 현행 실손보험 제도 개선 - 미용 의료 분야 제도개선

시사점

정부는 금번 정책 패키지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혁 실천 로드맵 마련을 신속히 추진하고, 발표 예정인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패키지 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3. 의약품 수출전략 로드맵 수립

정부는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도약'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바이오헬스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2023. 3. 24. 발표한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 바이오 행정명령(2022. 9.) 등 주요 국가의 자국산업 보호주의에 대응하여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미국 등에 진출하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5년 후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현재 의약품 수출액보다 2배 높은 160억 달러 수준입니다. 국내 제약사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 등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 의약품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분	내용
1	정부 간 다각적 협력 모색을 통한 글로벌 진출 진입장벽 완화	- 美 자국 생산 및 규제강화에 대비한 대응 강화 - R2R 협력 강화 - 외국에서 국내 의약품을 간소하게 허가하도록 협력 확대 - 국제 규제협업체 활동 강화, GMP 상호 면제 협력 확대 - WHO 인증 우수규제기관 등재 추진 및 WHO PQ 희망업체 대상 기술자문·교육 등 지원
2	글로벌 동향·정보 제공 및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한 수출 기회 확대	- 제약바이오 수출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 수출 지원 정책 및 지원사업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추진 - 수출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강화 - WHO PQ, FDA 비임상 표준데이터 작성, IP 컨설팅 지원 - 현지 제약전문가 위원 확충, 컨설팅 전문분야 확대 등

3	국가별 산업 거점 확보를 통한 국내 기업 현지 사업화를 촉진	● 제약바이오 수출 전략 로드맵 수립 - 전략 국가별 · 대상품목별 시장진출 및 수출전략 로드맵 수립 ● 주요 국가 현지 지원체계 강화 - 우수 의약품 생산 기업의 미국 등 유통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홍보 ·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강화 -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리스크 경감 및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현지 지원체계 강화 ● 글로벌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교류 지원 - 매년 “BIO KOREA” 개최를 통한 기술·비즈니스 활성화 및 수출 기회 지원 ● 바이오헬스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통한 산업진출 기반 강화 - ACT-A 의사결정기구 참여로 미래 팬데믹 대비 국제공조체계 합류, 게이트 재단 · CEPI 등과 협력 강화
---	-----------------------------------	---

시사점

정부가 5년 후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현재 의약품 수출액보다 2배 높은 160억 달러 수준입니다. 국내 제약사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 등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 의약품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

정부는 2024. 2. 4. ‘혁신하는 건강보험, 함께 건강한 국민의 나라’ 슬로건으로 4대 추진방향 제시하는 내용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존 종합계획이 보장률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계획은 지불제도에서 다양한 보상기전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계획을 통해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의료를 보장하고, 합리적으로 가격을 조정하여 의료 공급을 정상화하고, 의료 남용은 줄이며 안정적인 공급망과 의료혁신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금번 제2차 국민건강 보험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주요 내용 〉

	구분	내용
1	의료서비스 적정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위한 지불제도 개혁	❶ 필수의료 등 저평가 항목을 집중 인상할 수 있도록 수가 결정구조 개편 ❷ 공공정책수가 도입 ❸ 의료 질(質) · 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의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추진 ❹ 혁신계정 도입 및 성과 중심의 통합적 체계 전환
2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을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❶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 중심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 · 협력 강화 ❷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혜택 확대,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 관리체계 구축, 예방과 통합적 건강관리 지원 강화 ❸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 개선, 암 · 희귀난치질환 등에 대한 약제비 부담 완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강구

3	의료납용 철저 차단 및 부담 가능한 범위 내로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❶ 충분한 비급여 진료 정보 제공 및 실손보험 개선체계 구축, 비급여 목록 표준화 및 권장가격 제시 방안 검토, 비(非)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 금지 재평가를 통한 비급여 관리 강화 ❷ 병상·장비 수의 적정 관리 및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 방지. ❸ 재평가를 통한 급여 항목 관리 ❹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 지속 추진과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 검토 및 납부 편의 개선 ❺ 보다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보험재정 운영·관리 체계 마련
4	필수의약품 등 안정적 공급 및 의료 혁신 통한 선순환 구조 마련	❶ 안정적인 필수약품 공급을 위한 국산 원료 사용 유도하고, 국내 생산 기반시설 (인프라) 유지를 위하여 약가를 우대하는 등 다각적 지원 강구 ❷ 혁신적 의료기술의 신속 도입 지원, 보건의료 혁신을 주도하고 안정적 공급망 구축 에도 기여하는 기업에게 가격 우대 등 혜택 제공 방안 검토 ❸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활용 확대를 통한 보건의료 혁신

시사점

특히, 정부는 필수의료 등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나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영역에는 5년간 10조 원 이상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Part 7 | 선거와 경제

I. 2024년 경제전망

1. 세계경제

세계경제는 인플레이션이 진정(6.8% → 5.8%)되면서 전년과 같은 수준의 성장률(3.1%)을 보이겠지만, 과거 평균성장률(2000~2019, 3.8%)을 고려할 때, 성장세는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4. 1. IMF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	2023년	2024년	2025년
세계	3.1	3.1	3.2
미국	2.5	2.1	1.7
독일	△0.3	0.5	1.6
프랑스	0.8	1.0	1.7
일본	1.9	0.9	0.8
영국	0.5	0.6	1.6
한국	1.4	2.3	2.3
중국	5.2	4.6	4.1
인도	6.7	6.5	6.5

이러한 세계경제 성장은 양호하다고 할 수 있으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하방 리스크(downside risk)가 상존하고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먼저 각국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하여 가파르게 인상한 기준금리의 인하시기, 인하폭이 불투명 한데, 향후 실제적인 조치에 따라 세계경제는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국의 경우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인하시기가 시장 기대('24. 7.)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있고, 주요 IB 등 시장전문가도 인하시기 및 인하폭에 관하여 상이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연착륙”을 통해 경기침체는 피할 것으로 전망되나 고금리와 과다부채가 세계경제에 지속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 시기 제로 코로나 정책, 국제무역 축소로 저성장에 직면했고, 그 추세가 계속되면서 경기 둔화가 예상됩니다. 비구이위안 사태, 헝다그룹 청산명령 등 부동산 시장 충격으로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으로 중대한 위기는 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정학적 이슈, 전세계적으로 실시되는 선거 또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미국-중국 대립 격화, BRICs 확대 등 글로벌 사우스

(Global South) 위상 제고 등과 같은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에티오피아-소말리아, 베네수엘라-가이아나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산재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화, 확산될 수 있습니다.

올해는 76개국 42억명 이상이 투표에 참가하는 선거의 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각국의 선거 결과가 국제 정세, 정부 규제 등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폴리코노미(Policonomy)가 세계경제의 화두가 될 수 있습니다. 각국 주요 선거로는 1월 대만(총통), 3월 러시아(대통령), 4월 대한민국(국회의원), 5월 인도(대통령), 6월 EU의회(의원), 10월 일본(자민당 총재), 11월 미국(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 밖에 기후변화, 고령화, 양극화, 과다부채 등이 주요 리스크로 작용할 것입니다.

한편, 성장 측면에서는 생성형 AI가 혁신의 핵심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생성형 AI는 로봇틱스,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등의 생산성 향상을 견인하는 한편, 윤리적 문제와 노동시장 충격 등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한국경제

정부는 2024. 1. 4.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금년 한국경제의 성장률, 물가, 경상수지를 아래와 같이 전망하였습니다.

구분	2023	2024
경제성장률(%)	1.4	2.2
물가(%)	3.6	2.6
경상수지(억불)	310	500

정부의 전망은 큰 틀에서 세계 교역 및 반도체 경기 회복세에 근거하고 있으며 한국 경제는 이러한 흐름속에서 수출 중심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내외적으로 여러 리스크 요인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속하고도 충분한 대응 여부에 따라 금년 경제의 실질적 성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서는 부동산 PF, 가계부채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태영그룹 워크아웃 이후 추가적인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부동산 경기 부진 지속 시 PF 연체율 상승, 일부 건설사 유동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정부와 금융권은 관련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PF 대주단 협약, 정상 PF 사업장에 대한 21조원 규모의 자금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선제 대응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의 경우 금리 상승 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이 하락세로 전환됐으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3. 2/4분기 기준 101.7%로 100%를 상회하고 있는 만큼 누적된 가계부채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인구 감소, 생산성 저하 등 구조적 과제가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비중(%)은 '16년 73.5를 정점으로 '23년 70.8까지 하락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요국 대비 총요소생산성(G5 평균 85.6, 한국 61.4) 및 시간당 노동생산성(OECD 평균 53.7달러, 한국 43달러)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경제의 효율성, 효과성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낮은 것은 자영업자가 많은 서비스 부문의 낮은 생산성이 주된 원인입니다.

한국은 글로벌 혁신 지수 평가 기업규제환경 분야에서 53위(132개국 대상, WIPO, '23), 진입장벽 규제 정도에서 4위(38개국 대상, OECD, '21)로 평가될 만큼 과도한 규제, 경쟁제한적·불공정 관행 등이 강하게 자리잡아 경제 전반의 역동성을 저하시키는 실정입니다.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경제 전반에 혁신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한국 경제는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앞서 살펴 본 전세계적 선거 이후 국제 정세, 글로벌 규제 등 변화로부터 어떠한 방향으로 얼마만큼 영향을 받을 지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은 이러한 대내외적 경제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목표로 “민생경제 회복”, “잠재위험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을 추진하는 대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향후 세부대책의 수립, 시행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완화 추진” 등으로 역동경제를 구현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등 한국 경제의 성장기반을 확충하는데 노력할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민간 기업에서는 이러한 정책적 기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II. 한국 22대 국회의원 총선 전망 및 영향

1. 총선

올해 실시되는 4. 10. 국회의원 선거(총선) 결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방향, 정책 등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2대 총선이 가까워짐에 따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이외에 다수의 총선용 정당의 출현이 예상되지만, 총선 결과 전망은 크게 4가지 시나리오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i) 여당 과반 이상 의석 확보(151석 이상), (ii) 여당 원내 제1당 지위 확보(과반 아니지만 국회 다수당), (iii) 야당(특정 정당) 과반 이상 의석 확보, (iv) 야당 원내 제1당 지위 확보(과반 아니지만 국회 다수당).

총선은 윤석열 정부 집권 2년이 끝나는 시점에 실시되기 때문에 역대 ‘중간평가’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총선은 정권 심판과 정권 지원(정부견제론 대 정부지원론)의 대결 양상으로 흘러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총선 결과에 따른 전망

1) 여당 승리 시 전망

(i) 국회의원 과반 이상 당선으로 여당이 승리할 경우

국회의원 과반 이상이 당선되어 여당이 승리할 경우 국민들이 정권지원론에 확실하게 힘을 실어 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거대 야당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에 대한 부정적 평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역으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나 정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확보되면 개혁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기 시나리오대로라면 여당이 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즉, 행정부와 입법부를 여당이 장악하게 되는 것으로서 불완전한 정권교체에서 완전한 정권교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여당 출신이 선출되므로 정부 정책에 대한 국회 동의 획득이 용이해짐에 따라 국정과제나 정부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추진 동력이 확보됨에 따라 윤석열 정부 정책이 과감히 추진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그간 입법 과제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해 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정책에 대한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노동, 연금, 교육분야에서의 개혁, 킬러 규제 혁파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원전산업활성화 등 그 동안 야당 견제로 막혀 있던 경제 살리기 및 국정과제 중 입법 과제가 적극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ii) 과반은 아니지만 여당이 원내 제1당이 되는 경우

과반은 아니지만 여당이 원내 제1당이 된다면 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여당이 확보하게 됩니다. 원내 제1당으로서 여당 출신 의원이 국회의장이 되는 경우, 정부와 국회와의 협력이 현재 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야당의 벼랑 끝 협상 전술이 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야당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보다 높아지므로 현재 보다 나은 상황에서 국정과제나 정부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안정적 국정운영에 필요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정운영에 있어서 다소간의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정 과제나 정부 정책 추진을 위해 입법이나 예산이 필요한 경우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야당과의 관계 개선 모색, 일부 야당과의 정책 연합 추진, 또는 보수 성향의 정당과의 합당 내지 무소속 의원 영입을 통한 원내 과반 확보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야당의 승리 시 전망

(i) 야당(특정 정당)이 과반 이상으로 승리할 경우

야당(특정 정당)이 과반 이상으로 승리할 경우 국민들이 정권 심판론 내지 정부견제론을 지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나리오대로라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 상당한 제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당이 국회의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국정 과제 추진이나 정부정책 집행에 있어서 야당의 동의가 없다고 한다면 추진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레임덕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여당 내에서 차기 대선 후보 예정자를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화 움직임이 조기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행정부와 입법부의 이중 권력 상태로 인한 국정운영의 기초와 정책에 있어서 대립구도가 고착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정과제나 정부 정책 중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정책은 야당의 반대로 그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양곡관리법, 간호사법, 이태원참사특별법 등 민주당에서 21대 국회에서 강력 추진했던 법안들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큼니다.

(ii) 과반은 아니지만 야당(특정 정당)이 원내 제1당이 되는 경우

과반은 아니지만 야당(특정 정당)이 원내 제1당이 된다면 야당이 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쥐게됩니다. 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선출되면, 그로 인해 국회 동의를 필요한 국정과제나 정부정책 추진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범 야권의 정부 견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권 내의 선명성 경쟁과 함께 향후 대선을 감안하여 정책에 따라 여야간의 합종 연횡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립구도가 심화될 수 있고, 여소야대로 인해 국정운영의 동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정과제나 정부정책 추진에 있어서 상당한 애로가 예상되고, 조기 레임덕 타개를 위해 정계 개편, 야당과의 전략적 협력 또는 국정 기조의 대전환 가능성도 있습니다.

Ⅲ. 미국 대선 및 글로벌 정세 전망

1. 선거 동향

2024. 11. 5. 있을 미국 대선에서는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맞대결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 후보 모두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중국 견제, 공급망 리쇼어링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보호주의를 강조하며 미국 내 생산 증진을 위해 관세 인상과 무역 협상에서의 강한 입장을 취하고자 하는 반면, 바이든은 상대적으로 다자 협력을 강조하며 국제규범에 기반한 접근을 택하는 편입니다. 또한, 트럼프는 화석연료 산업 지원과 화석연료 프로젝트 확대를 강조하나, 바이든은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산업 전환, 기후 변화 대응, 파리 기후협정 재가입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하면 우리나라 경제통상 및 에너지안보 분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고수하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우리나라의 경제통상, 에너지안보, 기후 및 환경 문제와 같은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따른 대비가 요구됩니다. 본 장에서는 2016년(이하 “트럼프 1.0”)과 2024년(이하 “트럼프 2.0”)의 경제통상 및 에너지안보 분야 공약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트럼프 1.0과 트럼프 2.0 주요 공약 비교〉

	트럼프 1.0 주요 공약	트럼프 1.0 주요 공약 이행 결과	트럼프 2.0 주요 공약
« 미국우선 · 보호주의 무역정책 »			
경제통상	불공정무역 감시 및 제재 강화	2017. 3. 31. 무역적자 구조 파악 및 반덤핑/상계관세 강화 행정명령 서명	트럼프 상호무역법(Trump Recip-rocal Trade Act) 입법
	국경조정세 도입	2017. 7. 27. 백지화 합의	보편적 기본관세 도입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2019. 8. 5. 미 재무부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대중 의존 완전 종식을 위한 무역 정책 추진
	미국 기업 해외 이전 방지 (제조업 지원)	국경조정세 도입 시도하였으나 무산	-
	NAFTA 재협상(탈퇴)	2017. 8. 16. 멕시코, 캐나다 와 재협상 돌입 2018. 9. 30. USMCA 합의	IPEF 협상 폐기
	TPP 협상 폐기	2019. 10. 23. 탈퇴 행정명령 공식 서명	
에너지안보	오바마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 백지화	2020. 11. 4. 파리협정 탈퇴 서 명 2017. 10. 10. 석탄화력발전 소의 조기 폐쇄를 위한 청정전 력계획(Clean Power Plan) 백지화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 백지화
	화석연료 생산 확대 정책	2017. 1. 24. 에너지 인프라 프 로젝트 승인 (키스톤 XL 송유 관, 다코타 대형 송유관)	화석연료 생산 확대 정책

경제통상 및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트럼프의 공약은 1.0과 2.0 모두 미국 우선주의와 중국 견제를 바탕으
로 유사한 기조를 보이고, 중국 견제에 있어서는 지난 1.0보다 세부적인 공약이 2.0에서 제시되었습니다.
트럼프 1.0 당시 많은 공약들이 어느 정도 이행된 점에 비추어 보면, 트럼프 2.0 주요 공약도 상당히 이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트럼프 당선 시 전망 및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1) 경제통상 부문

트럼프 1.0 시기에는 불공정무역 감시 및 제재 강화, 무역협정 재검토 등을 통해 무역 적자 축소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한, 불공정무역 품목을 지정하고, 반덤핑·상계관세 부과를 통해 불공정무역국을 압박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약을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트럼프 2.0은 지난 1.0의 연장선으로 미국의 경제회복과 산업 보호를 위해 IPEF 협상 폐기, 대중국 규제 강화, 보편적 기본관세 도입, 상호무역법 입법 등을 통해 자원과 산업에서 자립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캠프가 발표한 예비공약인 아젠다 47에 따르면, 트럼프는 미국 경제회복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보편적 기본관세(Universal Baseline Tariffs) 도입, △트럼프 상호무역법(Trump Reciprocal Trade Act) 제정, △대중국 의존 종식을 위한 무역 정책 추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이하 "IPEF") 협상 폐기 등을 주요 공약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편적 기본관세를 도입하여 국내 생산을 보호하고 외국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여 미국 노동자와 일자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관세율과 실행 방안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과거 인터뷰에 평균 3%대의 관세에서 추가 10% 관세가 제시되었고, 자국 화폐를 평가절하하거나 불공정무역행위에 가담한 국가의 상품에는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호무역법 제정을 통해 상대국이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에 상응하는 관세율을 상대국의 수입 상품에 부과하여 무역 적자 감소와 미국 일자리 보호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의 노동자와 일자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지난 1기 집권 당시 백지화되었던 국경세도입을 현 상황에 맞추어 다시 추진하려는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중국 견제에 있어서는 미국의 모든 핵심 인프라에 중국의 접근 장벽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규제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국의 '최혜국 지위' 박탈, 중국산 필수품 수입 축소, 기업들의 대중국 투자 규제 및 모든 중국 아웃소싱 기업에 대한 연방 계약 금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또한,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60%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에 대해 참모들과 논의하는 등 지난 집권 시기보다 대중 견제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외에도 취임 즉시 미국의 제조업을 공동화하고 일자리 감소를 촉발하는 IPEF 협정을 폐기할 것을 선언하며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정책으로 복귀할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트럼프가 1.0 당시 제시한 공약이 상당 부분 이행된 것으로 보아 2.0 공약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그가 제시한 일부 공약은 국제규범 위반의 소지가 있어 실제로 이행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복귀할 경우, 무역 균형을 강조함에 따라 한국의 대미 흑자 폭이 큰 자동차·철강·전기전자 산업 위주로 통상 이슈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하여 △원산지기준 강화, △미국산차 추가 인증제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특히, 러스트벨트(rust belt) 지지자들을 위해 철강산업 등 특정 산업에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에 따른 수입규제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적극적으로 미국 수입규제 동향 및 바이아메리칸·주요 산업 관련 행정 명령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에너지안보 부문

트럼프 1.0 당시 기후변화 자체를 부정(Climate Change Denial)하고, 에너지 안보·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공급망 안정에 중점을 두었는데, 이와 같은 성향을 반영한 정책들이 재선시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촉진되어 미국 경제에 위기가 왔고, 전기차 생산을 위해 중국 자원에 의존하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트럼프는 에너지 공급 확대를 통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i)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축소하고, (ii) 저렴한 에너지를 제공하기 위해 화석연료 및 원자력 에너지 생산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i) “Anything But Biden”

트럼프는 전기차로의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규제를 백지화 또는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는 강화된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기준을 담은 기업평균연비규제 제도(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CAFE)와 2032년까지 자동차 판매량의 67%가 전기차가 되도록 의무화하는 규제를 완화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트럼프와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은 재생에너지 등 특정 에너지에 대한 정부 지원을 명시한 정책들을 축소하기 위하여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이하 “IRA”)상 풍력 발전기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철회, 바이든 행정부의 대출 프로그램국(Loan Programs Office) 등 일부 에너지 부서의 폐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 밖에 △파리협정의 재탈퇴, △녹색산업에 대한 대규모 재정 지출을 골자로 하는 그린뉴딜 정책 폐지, △퇴직연금 투자 시 ESG 요소 고려를 금지하는 법안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ii) “Drill, Baby, Drill”

트럼프는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풍부하게 보유하는 석유·천연가스 등 전통적 에너지와 원자력 에너지 생산 및 공급능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는 △연방 토지 내 석유·가스 시추를 허용하고 관련 허가 절차의 요건을 완화 및 가속화하고, △화석연료 생산업체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파이프라인 건설 및 운영 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등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가 빠르게 승인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최저 수준으로 감소한 미국 전략비축유(Strategic Petroleum Reserve, SPR)를 재비축할 것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원자력 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원자력규제위원회를 현대화하고,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유지하며,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를 지원하고, △민간 원전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 또는 절차 간소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3) 트럼프 2.0 에너지 정책도 “America First”...다만, 친환경 산업 육성 지속될 것

트럼프 2.0 에너지 관련 공약들은 대체로 트럼프 1.0 당시 정책들과 겹칩니다. 실제 해당 공약들이 대체로 실현된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의 재생에너지 사업의 속도조절, △친환경 보조금의 대규모 삭감 등이 전망됨에 따라 한국 전기차·배터리 등 관련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관련 기업들은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 공약들 중 폐기하고자 하는 기존 법안이나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이 △대통령 행정명령 또는 의회 입법에 바탕을 두는지 구별하고, △법안의 수혜대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례로 트럼프는 IRA 법안을 폐기 또는 전면 수정하겠다고 밝혔지만, IRA 법안이 의회 입법으로 확정된 점, IRA 수혜주가 공화당 지역구인 미국 중남부에 집중된 점을 미루어 봤을 때 동법을 백지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도 다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각 주가 가진 에너지 관련 정책권한이 상당하므로 연방정부가 일방적으로 기존의 정책을 완전히 변경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글로벌 정세

1) 분쟁의 계속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전쟁, 대만 해협의 긴장 등 여러 지역에서의 분쟁의 계속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가자 지역의 분쟁이 중동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된다면 전세계적으로 무역, 통상 및 에너지안보 등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 수급의 불안정과 그에 따른 가격 상승, 홍해에서의 후티 반군의 상선 공격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세계 무역흐름의 경화는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2) 미국, 대만을 비롯한 세계적 선거의 해

2024년에는 미국 뿐만 아니라 70여개 국가에서 선거가 치러지고, 주요국 지도자의 교체로 여러 국가 간의 관계와 세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지난 1월 13일 치러진 대만 총통선거에서 대만의 독립을 중시하는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되어 중국과 대만 간의 긴장이 높아졌습니다. 당장 세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라이칭더 당선자가 5월 20일 총통으로 취임한 후 추진하는 정책에 따라 긴장관계가 고조되고 실제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바 이든 대통령과 달리 대만 문제에 있어 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 대만의 반도체 산업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트럼프가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미국-중국-대만 간의 관계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중국과 대만 간의 경제협력기본협정 (ECFA)까지 파기된다면 대만과 중국 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와 무역관계를 가진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많은 상선이 왕래하는 대만해협에 긴장이 고조되어 안전한 항행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수출을 위해 의지하는 해상무역 경로가 막히고 운임 등 관련 비용이 증가하는 등으로 우리 기업과 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3)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와 미국 대선

제13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MC-13)가 2024. 2. 26.~29. 중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개최되어 분쟁해결제도 개혁, 수산보조금 협상, 식량 안보 등의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미국의 부정적 태도로 인하여 위축된 세계무역기구가 오랫동안 논의한 의제들을 통과시키고 자유무역을 지키기 위한 국제 기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기대와 걱정이 있습니다. 설사 중요한 의제들에 대해 합의하더라도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행정부보다 더 세계무역기구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어렵게 달성한 합의들이 파기되거나 그 실효성이 약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윤 성 조 변호사

M&A

T 02.3404.0196

E sungjo.yun@bkl.co.kr



김 목 홍 변호사

M&A

T 02.3404.0460

E mokhong.kim@bkl.co.kr



김 경 석 외국변호사 (New York)

M&A

T 02.3404.0283

E ks.kim@bkl.co.kr



이 형 석 변호사

건설부동산

T 02.3404.0145

E hyungsuk.lee@bkl.co.kr



박 철 규 변호사

건설부동산

T 02.3404.0657

E choulkyoo.park@bkl.co.kr



백 호 석 변호사

건설부동산

T 02.3404.0686

E hosuk.baik@bkl.co.kr



이 혁 변호사

금융소송

T 02.3404.0669

E hyuk.lee@bkl.co.kr



이 동 수 변호사

금융소송

T 02.3404.0189

E dongsu.lee@bkl.co.kr



윤 정 노 변호사

금융소송

T 02.3404.6592

E jungno.yoon@bkl.co.kr



김 성 수 변호사

인사노무

T 02.3404.0673

E seongsoo.kim@bkl.co.kr



김 상 민 변호사

인사노무

T 02.3404.7545

E sangmin.kim@bkl.co.kr



구 교 웅 변호사

인사노무

T 02.3404.6547

E gyowoong.gu@bkl.co.kr

관련 구성원



강 태 옥 변호사
온라인플랫폼 및 AI 규제
T 02.3404.0485
E taeuk.kang@bkl.co.kr



박 지 연 변호사
온라인플랫폼 및 AI 규제
T 02.3404.0655
E jiyeon.park@bkl.co.kr



안 호 준 변호사
제약바이오
T 02.3404.6409
E hyojun.an@bkl.co.kr



이 영 찬 고문
제약바이오
T 02.3404.7508
E youngchan.lee@bkl.co.kr



최 성 락 고문
제약바이오
T 02.3404.0365
E sungrak.choi@bkl.co.kr



우 병 렬 외국변호사 (New York)
선거와 경제
T 02.3404.6990
E byongyol.woo@bkl.co.kr



최 석 림 변호사
선거와 경제
T 02.3404.0654
E seokrim.choi@bkl.co.kr



한 창 완 변호사
선거와 경제
T 02.3404.1076
E changwan.han@bkl.co.kr



권 소 담 변호사
선거와 경제
T 02.3404.7651
E sodam.kweon@bkl.co.kr